

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가단1235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경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2021. 4. 13.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유)로부터 위 회사의 C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채권 등을 양수받은 후 C를 상대로 49,631,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9.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94361).

나. 피고의 부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8. 4. 9. 사망하자 처인 F, 자녀들인 피고, G, C는 2021. 4.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위 협의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이 사건 협의 당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2/9지분 이외에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던 반면 위 가항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협의 성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는 이 사건 협의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며,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한 이 사건 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협의 당시 원고를 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민

부동산 목록

1. 경상북도 경산시 대 132㎡
 2. 경상북도 경산시
-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세멘트벽돌조외가평가건축택 1동
건평17평4홉8작
세멘트특조스라브층창고1동
건평1평2홉3작 끝.

